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5. 9. 2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1. 제안경위

2005.9.2.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봉현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제안이유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표창은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함(안 제2조)
- 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함(안 제3조)
- 다.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으로 함(안 제4조)
- 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수여대상은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와 의회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마. 표창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함(안 제10조)
- 바.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수여함(안 제11조)
- 사.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함(안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표창대장 관리) ①표창은 반드시 별지6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에 등재한후 수여한다.  
②표창대장은 구의회사무국에 비치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금박지인쇄

← 완자무늬

카바마탕 : 견직구로스  
진곤색

┌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별지 제2호 서식]



계 호

표 창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 표 창 문 )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장

(305mm×450mm)

[별지 제3호 서식]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제 호

상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 표 창 문 )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별지 제4호 서식]



← 금박지인쇄

제 호

감 사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 표 창 문 )

← 금박지인쇄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장

(305mm×450mm)

[별지 제5호 서식]

##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직 업		직 위	
추 천 훈 격					
공 적 사 항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 표 창 대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번호	표창 종별	표창 년월일	피 표 창 자				검인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주민등록 번호	